

소방청고시 제2026-20호

[시행 2026. 5. 4.] [소방청고시 제2026-20호, 2026. 5. 4., 일부개정]

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
일부개정고시안

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규제의 재검토) 「행정규제</u> <u>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16년</u> <u>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</u> <u>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</u> <u>까지를 말한다)마다 이 고시의</u> <u>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</u> <u>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11. 1.>

제2조(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)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2. 11. 1., 2016. 5. 13.>

1. 분기배관
2. 포소화약제혼합장치<개정 2016. 5. 13.>
3.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<개정 2016. 5. 13.>
4. 시각경보장치
5. 자동차압급기댐퍼<개정 2023. 3. 28.>
6. 자동폐쇄장치
7.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<개정 2016. 5. 13.>
8. 피난유도선
9. 방염제품<신설 2012. 2. 9.>
10. 다수인피난장비<신설 2012. 2. 9., 개정 2016. 5. 13.>
11.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<신설 2012. 11. 1., 개정 2016. 5. 13.>
12. 승강식피난기<신설 2012. 11. 1.>

13. 미분무헤드<신설 2013. 11. 13.>
14. 방열복<신설 2014. 8. 14.>
15.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<신설 2014. 8. 14.>
16. 압축공기포헤드<신설 2015. 1. 15.>
17. 압축공기포혼합장치<신설 2015. 1. 15.>
18. 플랩댐퍼<신설 2015. 4. 21.>
19. 비상문자동개폐장치<신설 2016. 1. 11.>
20.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<신설 2023. 1. 13.>
21. 휴대용비상조명등<신설 2023. 1. 13.>
22. 소방전원공급장치<신설 2023. 1. 13.>
23.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<신설 2023. 1. 13.>
24. 과압배출구<신설 2023. 1. 13.>
25. 흔들림 방지 버팀대<신설 2023. 1. 13.>
26. 가스계소화설비헤드<개정 2025. 12. 1.>
27. 소방용 행가<신설 2023. 1. 13.>
28. 간이형수신기<신설 2023. 1. 13.>
29. 방화포<신설 2023. 3. 28.>
30. 간이소화장치<신설 2023. 3. 28.>
31. 유량측정장치<신설 2023. 3. 28.>
32. 배출댐퍼<신설 2023. 3. 28.>
33. 송수구<신설 2023. 3. 28.>

제3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4. 21., 2016. 1. 11.>